
2021년 여가친화인증사업 신청 공고

문화체육관광부(장관 황희)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, 국민들의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2년부터 여가친화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여가친화인증사업은 근로자들이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·운영하는 기업·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.

근로자의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운영하도록 지원하며 여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·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1년 4월 7일
문화체육관광부 장관

1. '여가친화인증제' 란?

-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·운영하는 기업·기관을 선정하여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 ※ 「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」 제16조 근거

2. 인증대상

- 여가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, 공공기관
- * 2021년부터 참여대상 확대(공공기관, 법인 등 추가) / 사업장별 신청 가능

여가친화인증사업 인증대상

- ① 「정부조직법」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, 특별지방행정기관, 부속기관, 합의를 행정기관
- ② 지방자치단체
- ③ 시·도교육청 및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다른 하급교육행정기관
- ④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
- ⑤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, 지방공사, 지방공단
- ⑥ 기업
- ⑦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설립 허가·인가를 받은 법인

○ 인증배제 대상

- 300인 이상 사업장 중 주 52시간 시행 위반 기업·기관
 - 3년 이내 「근로기준법」 위반 기업·기관(부당노동, 해고, 노사갈등, 악질적 임금 체불, 산업재해 등)
 - 3년 이내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」 위반 기업·기관
 - 3년 이내 사회적 물의, 비윤리적 행위 발생 기업·기관(임직원 폭행, 직장 내 괴롭힘, 성범죄 등)
-

3. 신청방법

| | |
|------|--|
| 공모기간 | 2021년 4월 7일(수) ~ 5월 21일(금) |
| 접수기간 | 2021년 4월 14일(수) ~ 5월 21일(금) |
| 제출서류 | 지역문화진흥원(www.rcda.or.kr) 공모사업 → 여가친화인증사업 → 신청서 다운로드 |
| 제출방법 | 이메일 접수 (happyoffice@rcda.or.kr) |
| 제출서류 | ① 사전점검표(별첨1) ② 여가친화인증 신청서(별첨2)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④ 여가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(별첨3) ⑤ 여가친화경영 운영실적(별첨4) ⑥ 여가친화경영 자체평가(별첨5) 및 총괄채점표(별첨6) ⑦ 여가친화경영 운영실적에 대한 증빙 등 |
| 결과발표 | 7월 중 예정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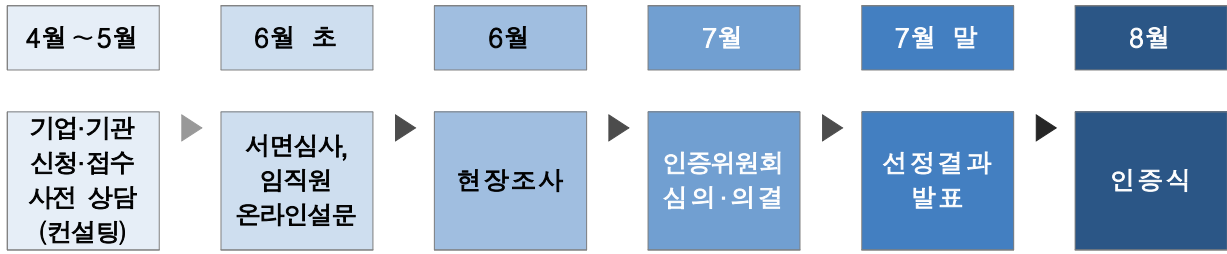
4. 사전·사후 상담(컨설팅) 실시(선택사항)

- 여가친화제도 및 경영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·기관에 대한 인증신청 독려
- 기업·기관 및 근로자의 여가문화 확산과 여가친화제도 점검을 위한 사전·사후 상담(컨설팅) 지원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사전 상담 (컨설팅) | 신청대상 | - 차기 년도 여가친화인증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·기관 ※ 2022 여가친화인증 신청 시 가점 반영 |
| | 신청·실시 기간 | - 2021년 10월까지 |
| | 신청방법 | - 지역문화진흥원(www.rcda.or.kr) → 여가친화인증사업 → 사전·사후 상담(컨설팅) 신청 다운로드 → 이메일접수 (happyoffice@rcda.or.kr) |
| | 상담(컨설팅) 내용 | - 사전 상담(컨설팅) 진행 시 신청기업·기관의 여가친화제도 점검 및 차기 년도 인증신청을 위한 안내 진행 - 기업·기관의 여가친화적 문화 수준에 따른 상담(컨설팅) 지원 |
| 사후 상담 (컨설팅) | 신청대상 | - 여가친화인증을 받은 기업·기관 총 201개사(2012~2020) - 유효기간 연장(2년), 재인증(매 3년) 신청을 준비 중인 기업·기관 - 인증심의 후 사후 상담(컨설팅)이 필요한 기업·기관 |
| | 신청·실시 기간 | - 2021년 10월까지 |
| | 신청방법 | - 지역문화진흥원(www.rcda.or.kr) → 여가친화인증사업 → 사전·사후 상담(컨설팅) 신청 다운로드 → 이메일접수 (happyoffice@rcda.or.kr) |
| | 상담(컨설팅) 내용 | - 여가친화인증 후 기업·기관의 여가친화제도 재점검 및 상담(컨설팅) |
| 진행방법 | -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(화상회의, 메일 등) 방식으로 진행 - 여가친화인증 전문가 매칭 추진 및 상담(컨설팅) 진행 | |

* 상담(컨설팅) 지원 신청 다수 시 중소기업 우선 진행

5. 추진절차



※ 위의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이나 운영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6. 인증기준

○ 신규인증

| 구분 | 대기업·공공기관 | 중견기업 | 중소기업 |
|-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|
| 인증 점수(점) | 70 | 65 | 60 |

※ 여가친화기업·기관 인증 자격 충족을 위한 최소점수

○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

| 구분 | 대상 | 인증 유효기간 |
|---------|---|---------|
| 신규인증 | 새롭게 인증을 획득한 기업·기관 | 3년 |
| 유효기간 연장 | 신규 인증받은 곳 중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기업·기관 | 2년 |
| 재인증 | 인증 유효기간이 종료된 기업·기관 ☞ 이후 신규 인증과 절차 동일 | 매 3년 |

7. 평가방법

| | |
|-----------|---|
| 서면평가(60점) | - 기업실태 및 여가제도 기업·기관에서 작성한 신청서, 자체평가표, 증빙서류 심사 |
| 현장조사(40점) | - 조직문화 (20점) 온라인 설문조사(여가친화적 조직문화) |
| | -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(10점) / 직원만족도 (10점) 임직원 인터뷰를 통한 여가친화경영과 제도 평가 |

* 가점 별도 부여(인증대상별 10~15점 이내)

8. 인증 기업 · 기관 특전(인센티브)

| 수혜 대상 | 종류 | 특전(인센티브) | 내용 |
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기업·기관 | 포상 |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(4) | 여가제도 및 조직문화 우수기업·기관 10개사 |
| | | 지역문화진흥원장상(4) | |
| | | 특별상(2) | |
| | 홍보 | 여가친화인증마크사용 | 네이버잡스앤, 기획기사 등 주요포털 메인 노출 |
| | | 주요포털 메인노출 | |
| | | 언론사 기획기사 | |
| 근로자 | 여가 프로그램 | 근로자휴가지원사업 | 한국관광공사 주관 정부인증 가점부여 및 실적인정 |
| | | 문화가 있는 날 직장문화배달, 동동동 문화놀이터 | 지역문화진흥원 주관 문화예술전문단체 프로그램 지원 |
| | |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예술로 |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관 기업(관)의 예술인 매칭 진행 |
| | | 직장인 인문학 강연 | -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 직장인 대상 인문학 강좌 운영 |

* 여가친화인증사업 특전(인센티브) 확대 추진 중

9. 문의사항

- 지역문화진흥원 교류협력팀 여가친화인증사업 담당자(02-2623-3128)

붙임 1. 2021 여가친화인증사업 공모 개요

2. 2021 사전점검표(별첨1)

3. 2021 지원신청서 및 총괄채점표 [대기업, 공공기관 등] (별첨2~6)

4. 2021 지원신청서 및 총괄채점표 [중소기업] (별첨2~6)

5. 2021 여가친화인증사업 사전·사후 상담(컨설팅) 안내 끝.